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321
----------	-------

발의연월일 : 2026. 1. 26.

발 의 자 : 조인철 · 박용갑 · 박희승
서천호 · 한정애 · 서삼석
정준호 · 민형배 · 이해민
안도걸 · 최혁진 · 박수현
박지원 · 박지혜 · 이정문
의원(15인)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등으로 인해 청소년이 유해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서적·신체적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등 청소년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설계 구조나 알고리즘에 내재된 청소년 유해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정보,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대한 삭제·차단 조치 의무를 규정하면서 그 이행 기한을 “지체 없이”라고만 명시하고 있어,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조치를 지연하는 원인이 될 여지가 있음. 아울러 권리침해 여부 판단이 어려운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 역시 사업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피해자 구제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서비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권리침해 정보의 삭제 및 임시조치 기한을 구체화하고 임시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온라인상의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과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청소년유해정보의 전송 우려가 있는 경우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 및 조치 내역 보고서를 매년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2조의4 신설).

나. 권리침해 정보의 삭제 등 요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조치하도록 구체화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의무 위반 정보 등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기한을 명확히 함(안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

다.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 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4조의2제4항)

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삭제요청 내용 및 조치 결과 등

을 기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함(안 제 44조의2제6항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5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2조의4제2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결과 및 조치 내역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제42조의3제3항 중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고,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로, “하여야 한다”를 “수행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 차단·관리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42조의4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4(청소년유해정보 위험평가) ①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청소

년에게 청소년유해정보가 전송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가 청소년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미치는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평가(이하 “위험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험평가의 결과 및 조치 내역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 기준·주기·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제2항 전단 중 “지체 없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체 없이”를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 내용 및 그 조치 결과를 기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76조제1항에 제5호·제5호의2·제5호의3 및 제5호의4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의4를 제4호의5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4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5의3. 제42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4.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정보의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거나 해당 정보의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4. 제44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삭제요청 내용 및 그 조치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 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 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 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 ----- ----- ----- ----- ----- ----- -----.
1. · 2. (생 략) <u><신 설></u>	1. · 2. (현행과 같음)
	3. 제42조의4제2항에 따른 위험 평가의 결과 및 조치 내역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① · ② (생 략)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u>정보 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를 차 단 · 관리하고, 청소년유해정보 로부터의 청소년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등</u> 청소년 보호업무	③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행한 다.

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생 략)

<신 설>

1.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 차단·관리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42조의4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의4(청소년유해정보 위험평가) ①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정보가 전송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가 청소년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미치는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평가(이하 “위험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험평가의 결과 및 조치 내역에 관한 보고서를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생략)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작성하여 매년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 기준·주기·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③ -----

-----그 사

실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④ -----

하여야 한다.

— — —

⑤ (생략)

<신설>

⑥ (생략)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⑤ (현행과 같음)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 내용 및 그 조치 결과를 기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76조(과태료)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4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위협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4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5의3. 제42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4. 제44조의2제2항 및 제4항

6. ~ 12.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의3. (생략) <u><신설></u> <u>4의4.</u> (생략) ③·④ (생략)	<u>에 따른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정보의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거나 해당 정보의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6. ~ 12. (현행과 같음) ② ----- ----- ----- --- 1. ~ 4의3. (현행과 같음) <u>4의4. 제44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삭제요청 내용 및 그 조치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자</u> <u>4의5.</u> (현행 제4호의4와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	---